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권일남**·전명순***

초 록

본 연구는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 중 아르바이트와 근로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도출해 봄으로써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대안과 개선 방향을 제시해 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K시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1,94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1,591부를 회수하여 통계처리하는 등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교수, 현장 전문가, 체험 학생과 청소년을 초점집단으로 구성하여 설문조사에서 얻기 어려운 내용을 보완하였다.

설문조사와 FGI를 통하여 얻어진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노동인권 의식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었다. 이는 그동안 최저임금관련이나 아르바이트 관련 문제 시 대응을 위한 홍보가 적절히 이루어진 관계로 아르바이트 이행과 관련한 법과 제도적 대응의 조건은 상당수준 긍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청소년은 노동현장에서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며, 청소년 근로에 관한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여겼다.

셋째, 청소년 노동인권침해 문제의 원인으로 관련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못한 점과 학교나 지자체에서 청소년 노동인권관련 교육을 적절히 제공해 주고 있지 못한 점을 들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인권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청소년 노동인권관련 교육 기회의 확대, 노동인권교육단체의 양성, 사업주의 노동인권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추진과 같은 제도 보완, 지자체 차원의 청소년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중장기계획수립 등을 제안했다.

주요어 : 청소년, 노동인권, 노동인권 실태, 노동인권 교육

* 이 논문은 2018년 고양시에 의해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의 일부를 사용하였음

** 주저자 :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choungji@hanmail.net

*** 교신저자 :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강사, synahbro@hanmail.net

I. 서론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의 노동인권은 정책적 지원의 주류에서 벗어난 부분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는 청소년들의 노동을 권리의 핵심 내용이나 발달과업의 한 영역으로 다루기보다는 주기능인 학업에서 벗어난 것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청소년의 노동은 주로 아르바이트라는 관점으로만 인식되어왔고 학업을 포기한 일부의 청소년들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여기면서 아르바이트에 직면한 청소년들은 가정과 학습의 두 영역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 왔다.

청소년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부정적이어서 청소년 노동자는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청소년기의 건강하지 못한 근로여건은 성인이 되어서도 큰 영향을 미쳐 적극적인 구직이나 질 높은 직종으로 전이를 위한 노력을 포기함으로써 고용과 구직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노동의 질에 대한 열악성뿐만 아니라 성인근로자에 비해 낮은 임금, 산업분야의 서비스영역 등 구조적 편중성, 기업주와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관계를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정당한 요구를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청소년 노동자가 많이 일하는 3,002개 사업장을 조사했는데, 그 중 2,424개(80.7%)의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4,613건의 법 위반사항이 발견된 것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8). 이 뿐만 아니라 특성화고 학생들의 산업재해와 죽음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사고 등으로 청소년 노동현실이 사회문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최근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법·제도적인 개선점은 꾸준히 마련되어오고 있다. 지자체¹⁾를 중심으로 청소년노동인권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진경민, 2018). 조례는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운영이나 신고전용전화 개설,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지키는 사업장에 대해 우대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밖에도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을 운영하고,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표준교안’을 개발하여 배포하는 등 여러 긍정적인 시도들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여

1) 강진군, 경기도, 고양시, 광명시, 광주광역시(광산구, 남구, 동구, 북구), 광주광역시, 구리시, 구미시, 군포시, 김포시, 동해시, 목포시, 무안군, 부산광역시(영도구, 중구), 부산광역시, 부천시, 서산시, 서울특별시(강남구, 강동구, 금천구, 동작구,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남시, 속초시, 시흥시, 아산시, 안양시, 여주시, 영암군, 원주시, 의정부시,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서구), 인천광역시, 장흥군, 전라남도, 전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춘천시, 충청남도, 평택시, 해남군, 홍성군(51개)

러 연구(김지경 외, 2015; 안선영 외, 2014; 황여정 외, 2016)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이행시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고,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초과노동을 포함한 언어폭력과 성희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부당처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곧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청소년의 노동인권과 관련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해 주거나 청소년의 노동인권관련 인식개선을 수반하는 교육이 부족한 것도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게 되는 노동인권의 보장실태와 상황이 얼마만큼 긍정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봄으로써 현재 이들에게 주어진 노동인권 관련 상황을 알아보고, 향후 이들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노동현장의 노동인권과 아르바이트 등 노동참여실태와 이들이 겪고 있는 노동인권보장의 문제요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노동인권증진을 위한 대안과 향후의 과제발굴 등 제도적 발전방향을 구축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노동인권의 이해

노동인권이라는 용어가 우리나라에 대중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 노동자들의 권리를 인권의 범주에서 접근하기 시작하면서부터다. 노동인권은 노동기본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과 더불어 시민적 자유와 권리, 다시 말해 신체의 자유나 안전의 권리,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 사생활의 권리 등 고용관계 안에서 특별히 침해되지 않고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이다(신월철, 2006). 이는 인권으로서의 노동권으로 이 개념에는 시민권·정치적 권리 영역, 경제적·사회적 영역의 두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전자는 자유와 평등 개념에 입각한 것으로 자유권이나 시민권으로 범주화되고 있는 영역이고, 후자는 자유권을 실질화시키기 위한 요구에서 나온 것으로 사회권으로 범주된 영역이다. 노동인권에는 자유권과 사회권이 함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자유권은 개인에 기초한 것이고, 사회권은 근로자의 집단적 권리이다(정아름, 2010).

청소년 노동인권은 청소년이 노동하는 현장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로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등의 청소년 노동인권 정의).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은 사회적인 약자라는 점에서 법과 제도적인 보장이 명시되어야 한다. 최근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장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적극적인 지원대책의 요구에 따라 각 지자체는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방안을 내놓고 있다. 청소년 노동인권은 우리나라 헌법, 근로기준법, 청소년법 등에서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고, 지자체는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를 제정하여 청소년 노동인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헌법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의 권리(제32조 제1항), 직업선택의 자유(제15조), 노동 3권(제33조)과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제32조 제5항)는 규정과 “국가는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제34조 제4항)는 규정을 통해 청소년의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는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 연소자는 취직인허증을 받아야만 고용할 수 있다는 것(제64조), 18세 미만인 자 유해·위험한 사업에 근로자로 사용 못함(제65조), 연소자의 연령을 증명하는 증명서 및 동의서 사업장 비치(제66조), 근로계약 대리 금지(제67조 제1항), 불리한 근로계약 해지 가능(제67조 제2항), 미성년자 독자적 임금 청구 가능(제68조), 근로시간 1일 7시간, 1주에 35시간 초과 금지(제69조), 18세 미만 동의없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 및 휴일 근로 금지(제70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법인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국가 및 사회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와 약물, 유해업소 및 매체에의 접근을 막는 것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서 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015년 10월 1일 광주광역시에서 최초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후 전남도, 성남, 원주, 광주, 목포, 서울, 경기도 등 총 5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청소년노동인권증진을 위한 제도적 발판을 마련해 놓고 있다.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계약을 하고 근로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청소년 노동인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청소년을 존엄한 인간으로 보며 청소년 근로 환경 개선을 통해 청소년을 노동자로 대우하여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

고자 하는 지향점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제도적 지원체계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청소년 근로권익매뉴얼을 만들어 청소년의 꿈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청소년이 알아야 할 정보인 나에게 맞는 일자리 고르기, 정당하게 대우받으며 일하기, 일자리 그만두기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권리와 일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 일하면서 겪게 되는 부당한 대우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마련하여 일하는 청소년의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플랫폼(유선전화, 온라인, 아르바이트 취업포털, 카카오톡, 청소년 커뮤니티 등)을 통한 상담채널을 구성하고 효과적인 권리구제 지원을 위해 '상담 및 권리구제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전문 상담시스템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노동복지센터와 노동인권센터,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등에서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권리 찾기,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2.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선행연구 고찰

청소년의 소비성향이 소비욕구로 증대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에서 청소년이 소비의 주체로 떠오르면서 청소년들은 부모로부터 받는 용돈으로는 제대로 된 문화소비생활을 향유하기 어려워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아르바이트를 선택하게 된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지원 부족은 청소년들의 인권보장의 어려움으로 나타나면서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연구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것을 토대로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과 노동인권 교육의 현상을 통해 노동인권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연구가 많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연구에서 조사한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통한 노동인권 실태들은 연소자 노동관계 법령 및 제도에 대한 인지 수준이 낮았고, 부당처우를 경험하거나 업무상 재해를 경험했을 경우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청소년은 많지 않았다(안선영 외, 2013). 또한, 아르바이트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지만 부당대우와 권리침해를 경험하고, 근로권익에 대한 인식수준은 높지 못하였다(황여정 외, 201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소년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연구보고서(황진구·유민상·정유진, 2018)에서 일하는 청소년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기본권 차원에서 접근하여 노동시장에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참여하도록 하고, 그러기 위해 모든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가출 청소년 등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제언을 하였다. 이들 연구들은 실태조사를 통한 청소년 노동인권의 현황이 인권친화적인 상황이 아님을 나타내었다.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에 관한 연구는 청소년 인권의 보호와 지원의 방안 중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및 관련한 법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김윤나, 2013; 유지연, 2011), 노동권 보장의 측면에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 문제에 접근했으며(구정화, 2017; 유형근, 2018), 노동인권교육의 내실화 필요성을 제시했다(안선영 외, 2014; 김지경 외, 2015). 진숙경 외(2015)는 민주시민교육의 일부로 노동인권교육을 선도적으로 추진한 경기도의 모범적 사례와 특성화고·일반고·대안학교 등에서의 노동인권교육 사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캠프 사례를 소개하였다. 전국적인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 제도와 운영 실태 조사가 시행되기도 했다(송태수·이원희·이수정, 2017). 청소년 노동인권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학교 현장에서의 교육실태를 다룬 연구들이 많이 있다.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노동인권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탐색하고(윤종수·김해성, 2016; 이진석, 2018; 조현실, 2016), 초·중·고 사회과 및 도덕과 교과서에 대한 포괄적 분석을 했다(송태수·노병직 외, 2017). 이들 연구들은 현행의 학교 노동인권교육이 내용적으로 빈약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기 쉽지 않고, 법조문 전달의 개념 설명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많은 정책적인 제안들이 있는데, 그러한 노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실효성이 입증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노동인권의 보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 상황을 점검하고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Ⅲ. 연구방법

청소년 노동인권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설문지를 구성하여 2018년 7월부터 8월까지 경기도 K시의 일반청소년과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문항은 다음과 같다.

표 1. 설문지 영역과 항목의 구성

영역	설문문항 내용	문항수
■ 청소년의 근로권익에 대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르바이트의 정당한 근로행위 ○ 아르바이트의 주장성 ○ 근로관련 법과 제도인지 ○ 고용주나 관리자의 부당성 요인인지 ○ 최저임금 ○ 아르바이트는 취업전의 과정인식 ○ 근로보호자료나 정보 등의 습득 용이성 ○ 근로보호나 근로권리 등의 정보습득 용이성 ○ 근로보호나 권리상담 용이성 	9
■ 청소년 근로(아르바이트)의 일반적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시도 ○ 근로시 고려사항 ○ 아르바이트십계명 인식도 	12
■ 청소년 근로와 노동인권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밤 10시 이후 야간근로 ○ 야간 및 밤샘작업 ○ 어리다는 이유로 불이익 ○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노동 ○ 일을 하다가 다쳐서 치료나 보상의 어려움 ○ 청소년 노동인권(아르바이트 등)과 관련한 교육 ○ 법적 문제나 어려움 해결장소 ○ 사전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 ○ 노동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 ○ 청소년 노동인권의 문제와 개선방법에 대해 고민 	10
■ 청소년고용기본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width: 50%;">○ 근로시기 <li style="width: 50%;">○ 업무교육이수 <li style="width: 50%;">○ 아르바이트 시간대 <li style="width: 50%;">○ 안전교육이수 <li style="width: 50%;">○ 급여 <li style="width: 50%;">○ 아르바이트십계명 정보인지 <li style="width: 50%;">○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20
■ 청소년 고용 및 노동참여 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tyle="width: 50%;">○ 아르바이트목적 <li style="width: 50%;">○ 아르바이트의 근로상황 <li style="width: 50%;">○ 아르바이트시 중요 고려사항 <li style="width: 50%;">○ 부당대우경험 <li style="width: 50%;">○ 아르바이트경로 <li style="width: 50%;">○ 아르바이트 건강위험 <li style="width: 50%;">○ 아르바이트업종 <li style="width: 50%;">○ 근로계약과 법준수 	13

청소년 노동인권 에 대한 전반적 개선책을 찾아보고자 청소년과 현장 전문가를 초점 집단으로 구성하여 면담(FGI: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IV. 분석 결과

1. 설문지 배포 및 회수 현황

설문지의 배포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지 배포 및 회수현황

대상	배포	회수	회수율(%)
특성화고등학교(5개교)	540부	490부	90%
일반고등학교(7개교)	1,200부	1,043부	87%
기타(6개 청소년시설)	200부	58부	29%
계	1,940부	1,591부	82%

전체 설문지배포수는 1,940부였으며 이중 특성화고등학교 490부(90.0%), 일반계 고등학교 1,043부(87.0%), 기타 시설 58부(29.0%)로 전체회수율은 82.0%로 나타났다.

2. 대상의 일반적 특성

전체 응답자 중 남학생이 43.3%를 차지하였고, 여학생은 47.5%로 조사되었다. 또한 학교 유형별로는 일반고가 65.6%, 특성화고 30.8%, 기타 0.6%였으며, 연령별로는 15세 미만이 6.9%, 16세가 31.9%, 17세가 가장 많은 40.7%, 18세 이상은 12.4%를 차지하였다.

표 3. 일반적 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구분		빈도	퍼센트		
전체 대상	성별	남자	689	43.3	아르바이트 경험	유	452	28.4	
		여자	756	47.5		무	1074	67.5	
		무응답	146	9.2		무응답	65	4.1	
		총계	1,591	100.0		총계	1,591	100.0	
	학교 유형	일반고	1,043	65.6	전체 대상	연령	15세	109	6.9
		특성화고	490	30.8			16세	508	31.9
		기타	9	0.6			17세	647	40.7
		무응답	49	3.1			18세 이상	198	12.4
		총계	1,591	100.0			무응답	129	8.1
							총계	1,591	100.0

3. FGI 대상의 특성

1) 전문가 FGI참여자 특성

표 4. 전문가 FGI대상

기관		인원
청소년 노동인권전문기관	○○북부노동교육센터, ○○비정규직센터,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노동복지나눔센터, 민주노총○○○○지부	5
교사	○○○고, ○○고, ○○중	4

2) FGI 참여청소년의 특성

표 5. FGI 참여청소년의 특성

대상	성별	특성과 아르바이트경험
청소년A	여	20살로 ○○푸드에서 일하고 있고, 전에 요식업에서도 일해 봤고 회사도 다녔었음
청소년B	남	고깃집에서 안 해본 것이 없고,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는 상황임
청소년C	여	고등학교 2학년(○○과) 재학 중이고 편의점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고, ○○○감자탕집에서 일하고 있음
청소년D	여	○○○키즈카페에서 일한 적이 있어서 다시 베이킹 키즈카페로 돌아가려 준비 중
청소년E	남	○○고등학교 2학년 배달아르바이트 중임
청소년F	남	학교를 안다니고 있고, 전에 배달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음
청소년1-5	남 2 여 3	아르바이트 경험 없음

4.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의견

1) 청소년 노동인권의식의 기초정보 수준

평소 청소년의 노동인권인식에 대한 인식에 대해 파악해 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아르바이트 유·무에 따른 노동인권예 대한 인식수준

문항	아르바이트 경험	전혀 아니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다
(1)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도 정당한 근로행위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	있다	-	1.0	10.2	34.2	54.6
	없다	0.3	1.4	9.9	39.2	49.4
(2)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주변 사람에게 당당히 말하기 어렵다	있다	59.8	26.0	8.5	3.3	2.3
	없다	40.3	37.5	14.4	6.1	1.6
(3) 아르바이트 등 근로관련 일에서 어떤 법과 제도가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	있다	13.8	26.5	38.5	17.7	3.5
	없다	8.6	25.6	32.1	28.6	5.1
(4) 고용주나 관리자가 시키는 일 중 무엇이 정당하고 부당한지를 잘 구분하여 알지 못한다	있다	19.4	34.4	28.5	14.4	3.3
	없다	15.6	37.9	26.7	17.1	2.7
(5) 최저임금을 받는 것은 당연하나 주지 않으면 일을 계속해야 하므로 당당히 요청하지 못한다	있다	49.2	26.5	15.6	6.7	2.1
	없다	38.9	34.8	15.0	9.1	2.2
(6) 아르바이트는 취업전의 과정이므로 다소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있다	39.8	27.3	20.8	9.4	2.7
	없다	42.0	34.9	13.0	8.3	1.7
(7) 내가 사는 곳은 청소년의 근로보호에 대한 자료나 정보 등의 습득이 용이한 편이다	있다	4.0	17.5	51.5	19.4	7.7
	없다	4.5	19.9	49.6	20.5	5.4
(8) 내 주변에서 청소년의 근로보호나 근로권리 등을 자세히 알고 싶을 때 관련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있다	2.9	14.2	46.6	25.7	10.6
	없다	4.2	17.9	41.5	28.2	8.3
(9) 내 주변에서 청소년의 근로보호나 권리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때 상담 등을 쉽게 받을 수 있다	있다	4.4	19.4	47.6	18.8	9.8
	없다	4.8	21.9	43.2	22.5	7.6

아르바이트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아르바이트경험이 없는 청소년의 노동인권 인식 수준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를 정당한 근로행위로 여기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으며,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당당하게 밝힐 수 있다고 한 비율(긍정응답율)이 아르바이트경험청소년은 88.8%, 아르바이트미경험청소년 88.6%를 차지함으로써 상당한 수준에서 자신이 근로를 하고 있다는 점이 몇몇함을 잘 지각하고 있었다. 또한 청소년근로인권 중 시키는 일이 정당한지 부당한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최저임금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대우를 좋지 않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아르바이트경험과 상관없이 청소년들이 청소년 노

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 최저임금의 요구와 고용주나 관리자의 부당함을 개선해 당당한 근로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인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근로관련 법과 제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변에서 청소년의 근로보호나 권리, 상담에 대한 정보 접근과 혜택에 대해서도 보통으로, 관심을 두지 않고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들은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법과 제도의 정확한 인식과 정보의 수용이라든지, 고용주와 근로자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 근로정보에 대한 수용 등의 필요성과 정보접촉, 더 나아가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상담 등을 알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더 많은 교육과 홍보를 통한 알림의 기능이 확대되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었다.

2) 아르바이트나 근로의 필수 정보인식 수준

아르바이트나 근로시의 필수정보에 대한 인식수준은 표 7과 같다.

표 7. 아르바이트나 근로를 할 때 알아야 하는 필수 정보인식

문항	아르바이트 경험	전혀 아니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다
(1)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5세 이상이나, 만 13-15세 청소년의 경우 취업인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있다	6.0	26.0	22.5	30.2	15.2
	없다	5.9	26.8	19.3	36.8	11.2
(2)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부모님 동의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제출해야 한다	있다	1.7	5.8	14.6	42.1	35.8
	없다	2.0	7.6	12.2	47.1	31.1
(3) 청소년에게 시켜서는 안되는 위험한 일이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안다.	있다	1.3	7.5	19.8	41.9	29.6
	없다	0.9	9.6	20.0	44.6	25.0
(4) 청소년 고용금지업소(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오락실, 성인오락실 등)의 종류를 알고 해당 업소에서 일을 해서는 안된다	있다	1.5	4.0	14.0	39.0	41.7
	없다	1.1	7.8	13.2	42.8	35.1
(5)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2장 만들어 사장님과 학생이 한 장씩 가져야 한다	있다	3.3	12.9	20.5	31.9	31.3
	없다	3.0	19.0	17.5	34.0	26.5
(6) 2018년 정부에서 정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이다	있다	1.7	3.8	15.9	32.2	46.6
	없다	2.1	13.1	18.1	41.7	25.0
(7) 아르바이트를 하다 다치게 되면 산재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있다	2.5	10.4	20.0	36.5	30.5
	없다	1.7	11.4	18.5	42.9	25.5
(8) 청소년에게는 하루 7시간, 1주일에 40시간 이상 및 야간근로는 금지되어 있다	있다	4.8	15.3	25.3	30.8	23.8
	없다	4.4	20.7	21.0	33.7	20.2

문항	아르바이트 경험	전혀 아니다	아니 다	보통 이다	그렇 다	매우 그렇다
(9) 휴일에 일하거나 초과근무 또는 야간근무를 할 경우, 원래 받기로 한 시급(시간당 임금)의 50%를 더 받을 수 있다	있다	4.8	15.1	27.6	30.3	22.2
	없다	4.7	22.3	22.6	32.6	17.8
(10) 일주일을 개근하거나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다(유급휴일은 일하지 않고 하루 평균 임금을 받는 것을 의미함)	있다	6.9	19.2	27.1	24.2	22.5
	없다	7.0	28.4	23.0	27.0	14.7
(11) 학교나 교육청 또는 시에서 운영하는 아르바이트신고센터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	있다	14.4	28.6	29.2	15.9	11.9
	없다	14.5	37.8	21.0	19.2	7.5
(12) 아르바이트를 하다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청소년을 도와주는 신고전화(☎1644-3119 또는 ☎1388)가 있는 것을 안다	있다	13.0	22.6	29.9	19.0	15.5
	없다	11.2	32.2	23.9	22.4	10.4

아르바이트나 근로를 할 때 알아야 할 필수정보에 대해 아르바이트경험 유무에 상관없이 취직인허증, 부모동의서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고용금지업소,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관, 최저임금, 산재보험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치료와 보상, 법정 근무시간 및 야간근로 금지, 휴일근무와 초과근무 또는 야간근무의 시급 산정 등에 대해서는 ‘그렇다’ 이상으로 절반 정도가 답했으나, 초과근무 및 개근 시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아르바이트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보통’이 가장 많았고, 아르바이트경험이 없는 청소년은 ‘아니다, 그렇다’ 순으로 답하였다. 아르바이트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경험이 없는 청소년 모두 통상적으로 지각하는 청소년노동인권 지식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으로 정보를 잘 숙지하고 있어 보인다. 이는 아르바이트경험 유무에 상관없이 아르바이트십계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숙지는 잘 되어 있어서 기본적 근로 권리를 행사하는 데는 별 무리없는 것으로 보이나, 아르바이트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유급휴일에 대해서 별로 인식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르바이트 시에 꼭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아르바이트에 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학교나 교육청 또는 시에서 운영하는 아르바이트신고센터의 설치와 부당한 대우 시 도와주는 신고전화가 있는 것을 아르바이트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아르바이트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더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청소년 근로(아르바이트)활동 이행시의 노동인권 수준

청소년 근로(아르바이트)활동과정에서 행동 관련한 노동인권수준에 대한 내용은 표 8과 같다.

표 8. 청소년 근로(아르바이트)활동과 관련한 노동인권수준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 이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친구가 밤 10시 이후 야간근로를 한 적이 있다	16.3	16.5	17.5	27.6	22.1
(2) 청소년은 약자이므로 야간 및 밤샘작업을 시키면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	29.0	34.9	21.3	11.9	2.9
(3) 어리다는 이유로 일을 하면서 불이익을 받을 것 같다	22.6	28.0	23.0	19.5	6.9
(4)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도 일하는 친구를 본 적이 있다	35.3	32.2	15.2	13.2	4.2
(5) 친구가 일을 하다가 다쳐서 치료나 보상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	32.6	35.7	20.7	7.9	3.1
(6) 청소년 노동인권(아르바이트 등)과 관련한 교육을 어디서든 받은 적 있다	15.0	21.1	27.1	21.3	15.4
(7) 청소년들이 일을 하다가 겪는 법적 문제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지를 알고 있다	10.9	26.3	40.5	13.4	9.0
(8) 청소년들이 사전에 노동인권교육을 받으면 일과 노동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이 줄어들 것 같다	7.5	11.5	43.8	24.6	12.5
(9) 시에서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다	12.1	25.5	38.8	15.4	8.1
(10) 스스로 청소년 노동인권의 문제와 개선방법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다	11.1	24.8	39.9	18.3	5.9

친구의 야간 근로 경험에 있어서는 아르바이트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를 나타냈고, 불이익, 청소년고용금지업소 아르바이트 금지, 다쳤을 때 보상은 아르바이트경험 유무에 상관없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답했다. 그러나 청소년 노동인권과 관련한 교육 받은 적이 있다고 여기는 청소년과 없다고 여기는 청소년의 비율이 아르바이트경험 유무와 관계없이 비슷했고, 법적 문제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아르바이트경험 청소년은 ‘보통’이 가장 높았고, 아르바이트경험 없는 청소년은 ‘보통’과 ‘아니다’가 높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인권교육을 받으면 일과 노동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았고, 시에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도 모르는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스스로 청소년 노동인권에 ‘보통’ 수준으로 고민해 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청소년들이 주위의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게 되는 부당함은 별로 없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노동인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 문제에 대해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 방법도 잘 모르고,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고민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직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의 내용이 청소년에게 실효성있게 전달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근로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실태와 현황

1)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기본 실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시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보는 것은 그림 1과 같다(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순서대로 2가지만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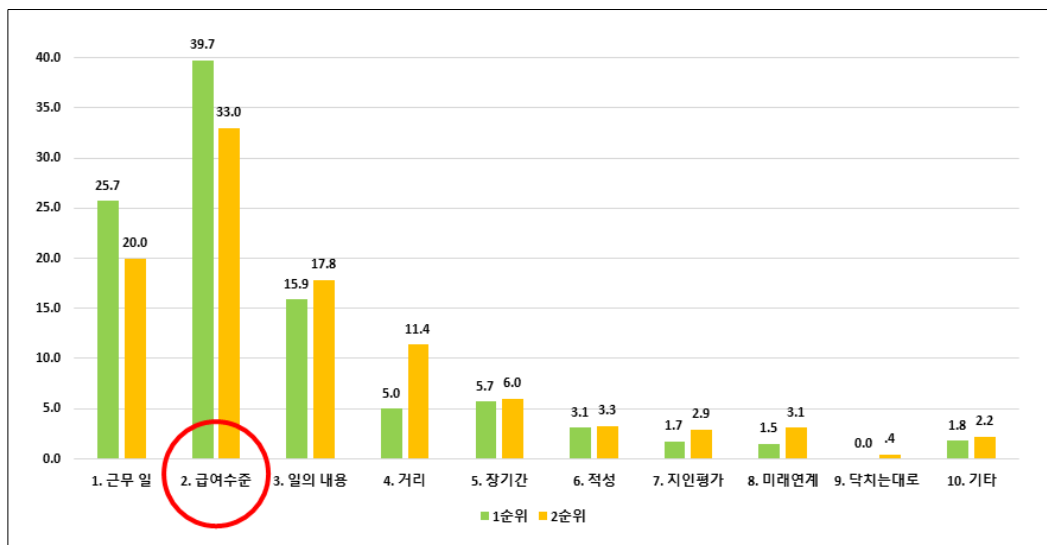


그림 1. 아르바이트 고려시 중요한 요인

현재 또는 앞으로 근로(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는 급여수준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39.7%, 33.0%), 근무일(25.7%, 20.0%), 일의 내용(15.9%, 17.8%)순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 것은 그림 2와 같았다(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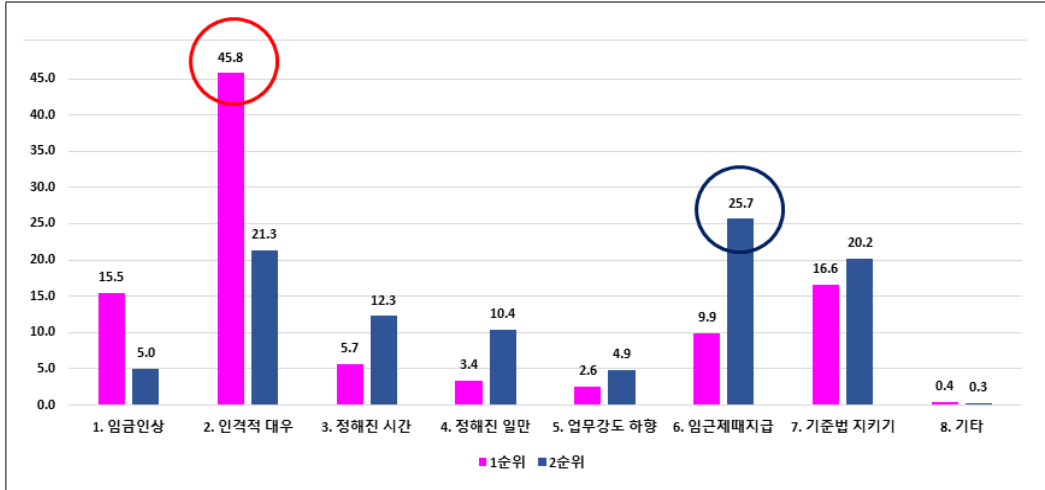


그림 2. 아르바이트 권리보호를 위한 필요요소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필요요소로 1순위에서는 인격적 대우, 기준법 지키기, 임금인상의 순으로 나타났고, 2순위에서는 임금 제때 지급, 인격적 대우, 기준법 지키기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 근로시간과 근로유형

현재의 아르바이트를 일주일에 며칠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림 3과 같이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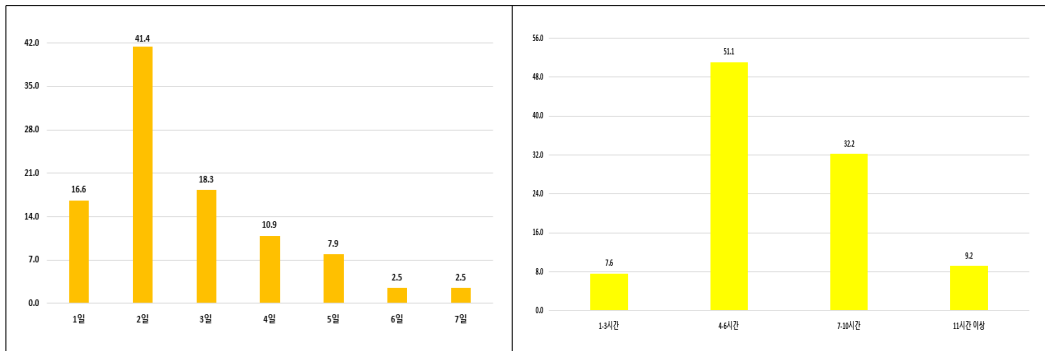


그림 3. 주당 및 하루 근로시간

청소년은 현재 하는 아르바이트를 일주일에 2일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1일, 3일 순으로 나타났다. 나름대로 적절한 시간을 아르바이트에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아르바이트의 하루 평균 일하는 시간은 4-6시간이 가장 많았고, 7-10시간이 뒤를 이었다. 소수이기는 하지만 거의 전일제 근로를 하고 있는 청소년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에 청소년은 하루 7시간의 근로시간을 정해놓고 있다. 하루 평균 7시간 이하의 근로를 하는 청소년이 51.1%, 7-10시간 근로를 하는 청소년이 32.2%이므로 절반 이상의 청소년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근로시간 내 근로를 하고 있으나 기준법 지키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이 일하는 시간대를 분석해 본 결과는 오후시간대와 밤10시까지가 가장 많았다. 청소년은 아르바이트로 오후시간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방과 후의 시간을 아르바이트에 할애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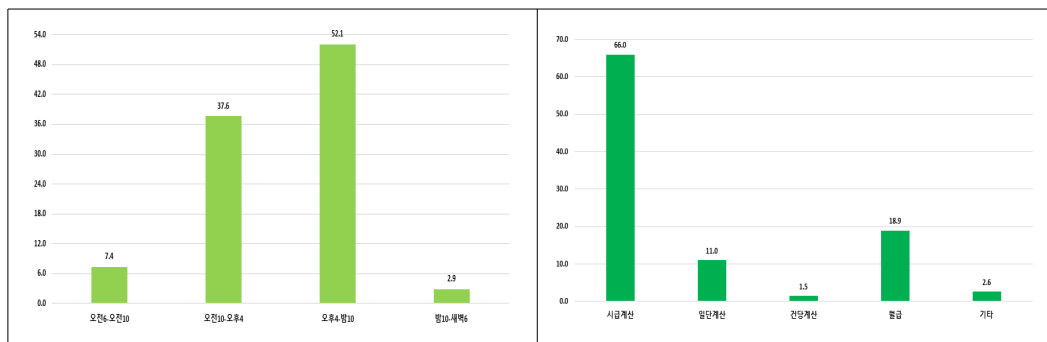


그림 4. 아르바이트 시간대와 급여제공방법

현재 수령하는 급여의 기준은 주로 시급계산이 제일 많았다. 거의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임금지급 방법은 시급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청소년과 고용주가 최저시급을 알고, 청소년은 정당하게 최저시급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하고, 고용주는 제대로 최저시급을 지급하여 건강한 아르바이트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청소년들이 경험한 업종의 유형을 보면 대부분 마트나 쇼핑몰에서의 경험이 많았고 편의점이나 당구장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 단순노동이 주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신의 진로에 도움을 받기 위한 업종을 선택하기보다는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여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업종을 고려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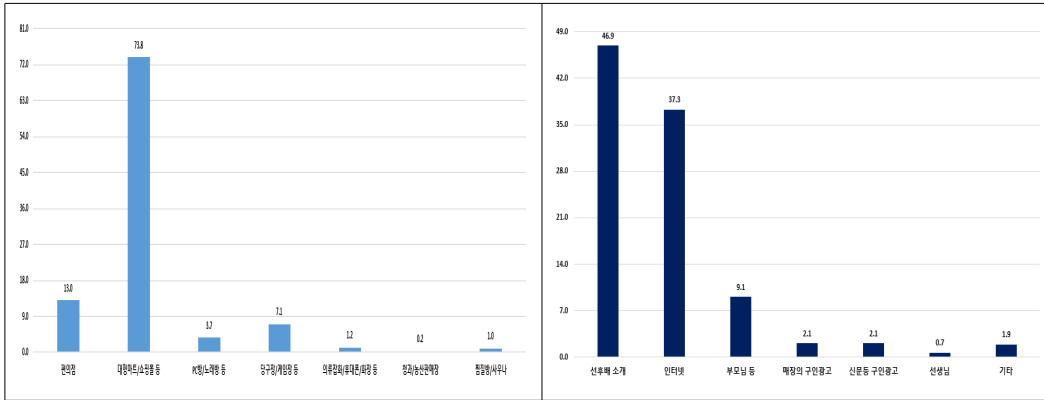


그림 5. 주요 경험 아르바이트 업종 및 정보입수경로

현재의 일이나 아르바이트의 정보를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선후배 소개나 인터넷 등의 구인정보를 통한 방법이 가장 많았다. 이는 아르바이트 정보를 어른들에게 요청하지 않고, 청소년이 개인적인 인맥 활용과 인터넷을 통한 스스로의 노력으로 얻고 있었다. 이는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하는 청소년은 주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청소년 노동인권의 제도적 보장 수준

첫째, 청소년의 노동인권보장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업무내용, 급여, 근로시간, 휴일 등의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그림 6과 같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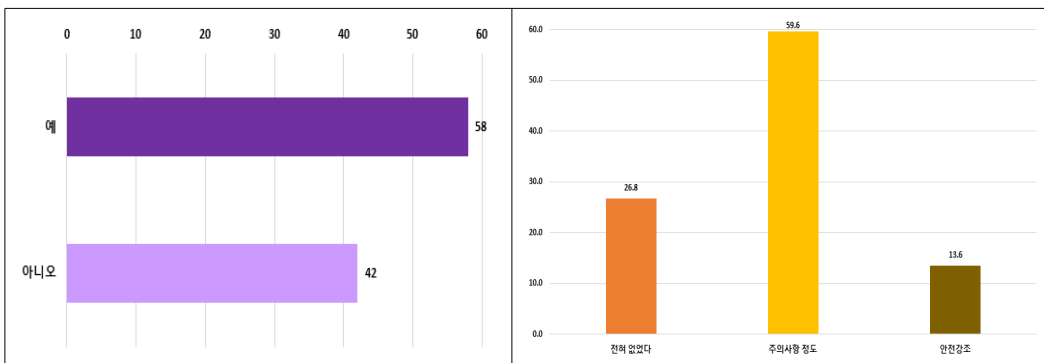


그림 6.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및 안전교육 이행정도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2%의 청소년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는 아르바이트 시에 작성하여 청소년이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도 비치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2조). 청소년이 이것을 알고 고용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 하고 아르바이트를 시키려고 할 때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청소년이 근로권익 보호와 권리 주장의 차원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둘째,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안전교육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곳은 주의사항 정도만 알려주는 수준으로 머무르고 있었다. 이는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아르바이트의 종류와 내용에 맞는 안전교육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수준의 주의사항에 그쳐 제대로 된 안전교육은 부족한 상황이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맞는 안전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4) 근로청소년의 일터 상황

청소년들이 일하는 곳의 아르바이트 상황에 대한 내용은 표 9와 같다.

표 9. 근로청소년 일터현황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가끔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일하는 곳은 상당히 위험(시간내 배달, 조리, 과중한 업무 등)하다	37.6	37.1	15.2	8.1	2.1
(2) 위험한 상황이라고 문제를 제기해도 큰 변화는 없다	30.9	32.0	26.5	7.4	3.2
(3) 부당대우(상해경험, 성괴롭힘, 신체적 부상, 폭언 등)를 경험한 적 있다	49.1	25.8	14.5	7.6	3.0
(4) 야간, 휴일, 연장노동을 강요받은 적 있다	39.7	26.1	18.2	10.9	5.1
(5) 최저시급을 제대로 지급받았다	3.5	5.1	17.1	17.1	57.3
(6) 지금 일하는 곳은 내가 바라던 희망일자리와 잘 맞는다	15.2	20.1	40.2	12.9	11.5
(7) 몸이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일한 적이 있다	33.6	30.3	20.1	10.4	5.6
(8) 주변사람이 근로 시 사고발생으로 치료나 보상을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경우를 본 적이 있다	46.3	32.2	15.7	3.9	1.9
(9) 연가나 휴가를 눈치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11.6	18.3	31.6	18.6	20.0
(10) 근무 중 적절한 휴식시간(휴게실 확보)이 보장되어 있다	9.5	18.3	25.0	20.6	26.6
(11) 밤 10시 이후 노동경험이 있다	30.6	18.1	13.2	16.9	21.3
(12) 야간 및 밤샘작업이 의도하지 않게 자주 발생하고 경험이 있다	32.4	25.7	21.8	13.2	6.9
(13) 앉거나 쉬지 못하게 눈치를 준다	30.8	24.5	20.4	15.0	9.3

위험한 일, 부당대우, 괴롭힘, 야간 휴일 연장 노동 강요 등이 거의 없다고 답했으며, 최저시급을 제대로 지급받고, 연가나 휴가도 눈치보지 않고 쓸 수 있는 여건 마련이 되어 있다고 답하였다. 이는 청소년과 고용주가 청소년 근로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실천하고 있음을 보여준 결과로 청소년 근로와 근로권익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긍정적 변화를 이루어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6. 전문가초점집단(FGI)을 통한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와 개선방안

FGI를 통한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공통된 사항은 청소년 노동인권을 맡아서 책임지는 정책부서의 필요성과 노동인권 교육의 강화 등이었다.

1)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부서의 정립 필요성

청소년 노동인권대책의 가장 큰 애로점은 현재 청소년노동인권의 주체가 없다는 점이다. 어느 곳에서 청소년 노동인권을 담당하고, 어떤 역량을 가지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렇게 정책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현장의 사업수행의 조정, 운영이 어렵다. 청소년 노동인권의 실행적 접근은 공공적 차원에서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 결국 공공 및 민간영역의 적극적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위한 거버넌스 체계가 매우 미약하다. 거버넌스가 강화된다는 점은 공공서비스를 토대로 민간과의 협력이 잘 이루어져 종국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실효적 서비스를 공공과 민간이 유기적으로 협력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 개선방안

(1) 전문가들의 개선방안

전문가들이 제시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을 위한 노동교육의 강화가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노동교육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청소년들이 사전 필요성을 지각하지 못하면 깊이 있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현재처럼 노동교육, 가치, 아르바이트십계명 등과 같은 교육을 중시하고 동시에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겪는 문제 등을 프로그램으로 개발하여 대처하도록 하는 인권교

육이나 동아리형태의 프로그램, 청소년봉사단체의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사업장의 관리 및 제도 등의 발굴과 지원 등의 역할도 적극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 근로인권 친화사업장 발굴지원이다.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앱에 청소년모범사업장을 등록해 준다면 가장 바람직한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기능도 청소년노동교육센터 등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는 지속성을 보장할 때 가능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 노동인권은 청소년활동과는 달리 전문성이 강한 영역이므로 청소년노동교육센터에 노무사를 배치하고 노무상담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이를 기반으로 교육과 연구 등을 활발히 할 수 있는 대책을 장기적으로 수립해 주어야 한다.

(2) 청소년들의 개선방안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의 개선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하였다.

첫째, 아르바이트교육이 학교 등에서 강조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주입식 교육보다는 체험과 경험을 중심으로 이해가 가능한 교육으로 체험경험을 나누도록 하는 실천중심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요청하였다.

둘째, 상담이 체계화되어야 한다. 아르바이트피해는 금전적 문제와 연계되거나 산재 등의 건강악화와 직결된 문제이다. 이러한 고민이 청소년 개인에게 그대로 집중되어 고민하는 사례가 없도록 신속한 상담, 처리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였다.

셋째, 건강한 사업장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방안, 아르바이트할당제, 아르바이트를 청소년들이 상시적으로 경험하는 공인된 중고시장, 벼룩시장, 바자회 등을 자주 열어 주는 기회 제공 등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제시하였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근로 현장에서 어떻게 보장되어 있는지 그 수준을 알아보고, 그 개선점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식 및 실태를 조사하였고, FGI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점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통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의식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 노동인 아르바이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동인권과 관련된 제도적 상태, 법과 규정 등의 상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둔감하여 부당성 인지 개선의 적극성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도 교육적 접근이 미흡함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노동인권 교육이나 정보습득의 어려움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문제발생 시 상담을 요청할 대안적 접근부재의 문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청소년 노동인권의 개선을 위한 행동적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청소년들의 근로(아르바이트)활동 시 노동인권 수준에서 부당함을 많이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부당근로나 아르바이트를 통해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은 없으나 노동인권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처력은 낮음을 나타냈다. 이는 실효성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과 문제의 대안을 제시해 주는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적 정책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청소년들이 근로(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먼저 급여수준이었고, 그 다음이 근무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이 노동의 대가로 받는 급여가 체불되거나 미지급될 경우 받는 심리적 박탈감, 불안감, 고통은 매우 클 것이다. 그러므로 이의 문제발생 방지 또는 해결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넷째, 청소년의 근로시간은 일주일에 2일, 1일, 3일 순이었고, 하루 평균 일하는 시간은 4-6시간, 7-10시간 순이었다. 근로기준법에 맞추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준법 지키기(하루 평균 7시간의 근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곳도 있었다. 이는 고용주가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권리를 제대로 지켜주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과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주 모두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이 적정한 시간을 일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청소년들이 경험한 업종은 마트나 쇼핑몰, 편의점이나 당구장으로 단순노동 위주였다. 이는 자신의 진로에 도움을 위한 업종을 선택하기보다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이후 자신의 진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업종과 비슷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아르바이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 수준에서는 많은 청소년(58%)이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안전교육에 있어서는 주의사항 정도만 알려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청소년과 고용주가 인식하고는 있으나 모든 청소년이 작성해야 하는 바 모든 청소년이 자신의 근로권의 보호와 권리 주장의 차원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안전교육에 있어서 일반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것은 안전사고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장의 업무에 맞는 안전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곱째, 근로청소년의 일터상황은 좋은 여건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과 고용주가 청소년의 근로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실천하고 있다는 것과 청소년 근로와 근로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발전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여덟째,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에 있어서 실제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학교나 지자체 등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함을 나타냈다. 이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이 실효성과 접근성이 낮게 제공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노동인권교육의 내실화 필요성을 제시한 안선영 외(2014), 김지영 외(2015)의 연구와 동일하다. 실질적인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 노동의 어려움을 나누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홉째, 청소년 노동인권의 실행적 대책을 마련할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공공과 민간영역에서의 협력이 부족함을 나타냈다. 이는 지자체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정책을 책임지고 해 나가는 주체가 어디인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청소년뿐 아니라 관심있는 여러 사람들도 사업수행을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는지 애로점을 토로하고 있다. 청소년 노동인권의 실효적 서비스를 공공과 민간이 유기적 협력을 이루어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청소년 노동인권의 실태를 바탕으로 개선점을 포함하여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노동인권보장을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나 근로관련 상담으로부터 구제에 이르기까지 장기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다. 조직수행과 실행적 관점에서 볼 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노동인권 대책은 체계성이 부족하다. 노동정책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부족할 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체의 미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따라서 청소년 노동인권을 수행하는 수행주체 기구 마련을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 수행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협의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노동인권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단기 전략으로부터, 청소년노동인권 주체 기구 확립 및 비전 제시, 법과 제도에 따른 청소년 노동인권 지원 체계 마련 등의 청소년

년 노동인권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중장기 전략까지 협의해 나가는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위해 사업주와 청소년간의 관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사업주가 건강한 기업가정신을 갖추고 있을 때는 청소년에게 친화적 환경을 제공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청소년이 피해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그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적절한 곳을 찾지 못할 경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이나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한 사업장 운영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고, 이들로부터 피해를 경험한 경우 올바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직접지원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개선을 위한 아웃리치활동 강화, 학교거점으로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시, 청소년 노동인권 역량강화를 위한 홍보지원, 청소년 노동권리수첩 제작 및 배포 등을 제안한다.

셋째, 청소년 노동인권의 적극적인 개선을 위해 시민의 의식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적 지지기능이 확대됨으로 청소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의식개혁은 선제적인 교육을 통해 가능하므로,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제고를 위한 사업주 대상 법정교육, 의무교육 이행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필수 제공, 청소년 노동인권 지원강사 발굴 및 지원, 특성화고등학교 진로지원 및 아르바이트문제 실효적 해결방안 제시 등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 노동인권의 실태를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행정적 지원과 관심, 예산의 명목화, 청소년 노동인권 지원을 위한 실제 기구의 지정과 지원, 그리고 청소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사업수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이를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한 도시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FGI가 진행되었다는 점과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인식과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후 연구에서는 여러 시, 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여 지역간 인식과 실태의 차이를 보고, 사업주가 인식하는 청소년 노동인권의 실태를 살펴볼 필요도 있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 (2018). 기초고용질서 점검결과, 2016-2017.
- 구정화 (2017). 고등학생의 청소년 노동권리 인지 및 침해경험 관련 요인 분석: 청소년 노동권리 보호방안 탐색을 위하여. 법과인권교육연구, 10(1), 107-133.
- 김윤나 (2013). 청소년 노동인권 지원 정책 현황 및 발전방안. 법과인권교육연구, 6(3), 1-21.
- 김지경·이상준·이계백 (2015).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방안. 고용노동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송태수·노병직·박도영·김기우·이은상 (2017). 사회과 교과서 노동교육 내용 분석. 청소년 고용노동교육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 송태수·이원희·이수정 (2017). 청소년 고용노동교육 국내 실태조사. 청소년 고용노동교육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노동연수원.
- 안선영·김희진·강영배·배경내·조혜영·박민경 (2013).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안선영·황여정·이수정·이로사 (2014).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유지연 (2011). 노동에서의 청소년권 보호 방안. 법과인권교육연구, 4(3), 23-48.
- 유형근 (2018).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실태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방안 검토. 법교육연구, 13(1), 63-92.
- 윤종수·김해성 (2016).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에서의 노동인권교육 내용 분석. 법교육연구, 11(2), 65-99.
- 이진석 (2018). 사회과 교육에서 노동과 노동권의 내용에 대한 연구: 고등학교 사회과 교육과정 변천을 중심으로. 법교육연구, 13(2), 111-143.
- 정아름 (2010).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연구-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24, 163-188.
- 조현실 (2016).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연구: 고등학교 사회과 노동인권교육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진경민 (2018).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의 실태와 발전 방안.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진숙경·김태영·김혜진·송태수·이원희 (2015). 노동인권교육 현황 및 발전방안. 경기도교

육연구원.

황여정·김정숙·이수정·변정현·이미영·안시영 (2015).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황여정·김지영·이윤주 (2016).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황진구·유민상·정유진 (2018). 청소년의 노동기본권 보장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1603&efYd=19880225#0000> 헌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8569&efYd=20191101#0000> 근로기준법

Abstract

A Study on the Status of Labor Human Rights for Youth and their Solutions

Kwon, Il-Nam*·Jeon, Myong-Su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art-time job and work-related conditions among youth labor rights issues and to find ways to improve them.

To reach this purpose, 1,940 copies of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youths in K-city, Gyeonggi Province, and 1,591 copies were collected and processed. And conducted FGI by organizing a focus group of professors, field experts, experienced students and teenagers related to youth labor and human rights.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survey and FGI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onsciousness of youth labor rights was quite high. This is because public relations for responding to problems related to minimum wage or part-time jobs have been properly made, so the conditions of legal and institutional response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part-time jobs seem to be quite positive.

Second, youths were regarded as not violating personal treatment at the workplace and not receiving wages on time, and their rights were violated if they did not observe the law on working for youths.

Third, the education on youth labor rights was not properly received, and there was a lack of information on the institutions or organizations that can receive youth labor rights education in schools or local

* First Author : Professor, Department of Youth Education and Leadership, Myongji University. choungji@hanmail.net

** Corresponding Author : Instructor, Department of Youth Education and Leadership, Myongji University. synahbro@hanmail.net

governments.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proposed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long-term plan to guarantee youth labor rights, resolving relations between employers and youth, and the expansion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related to youth labor rights, training of human rights education organizations, promotion of education for improving the human rights awareness of employers, and youth labor rights at the local level.

Keyword : youth, labor rights, labor rights status, labor rights education

투고일 : 2020. 05. 31 심사일 : 2020. 06. 23. 게재확정일 : 2020. 06. 26.